

## 결 정 서

제 호

신 청 인 :

귀하가 20 . . . 신청한 부과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5제2항 및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.

결정 내용

결정 이유

※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3.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4.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

20 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직인